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5. 16) 상정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5.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게 되면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재산세 세액이 과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5년 재산세 인상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50퍼센트 인하 조정함.(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1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게 되면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재산세 세액이 과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골자

- 2005년 재산세 인상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50퍼센트 인하 조정함.(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이하	1,000분의 0.7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원초과	12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2. (생 략)</p> <p>3. 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가목이외의 주택</u></p>	<p>제28조(세율) ①.....</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가목이외의 주택</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과세표준</th> <th style="width: 50%;">세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6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초과</td> <td>24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과세표준</th> <th style="width: 50%;">세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이하</td> <td>1,000분의 0.75</td> </tr> <tr> <td>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3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td> </tr> <tr> <td>1억원초과</td> <td>12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이하	1,000분의 0.7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원초과	12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이하	1,000분의 0.7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원초과	12만원+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p>4. 5. (생 략)</p> <p>② (생 략)</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